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동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여약

2016년 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52만 명으로 2012년 말 대비 40.7% 증가하고 보험급여도 60.1% 증가한 5조 원이 지출됨. 향후 인구고령화와 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수급자와 급여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세법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민건강보험공단(2017. 5)¹⁾에 따르면, 2016년 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84만 9천 명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52만 명이 수급하여 신청자 대비 수급자 비율은 61.3%로 나타남
 - 2016년 말 65세 이상 고령자 694만 명 중에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5%에 불과하지만, <표 1>과 같이 신청자와 수급자 수는 2012년 말 대비 각각 31.9%, 40.7% 증가하였음
 - 이처럼 신청자와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고령자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적인 요양등급 인정 범위 확대 등 요양보험 제도 개선 및 고령자와 가족의 인식 개선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표 1> 장기요양보험 신청 및 수급자 추이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2 대비 증감률
65세 이상 인구	5,921,977	6,192,762	6,462,740	6,719,244	6,940,396	17.2%
신청자	643,409	685,852	736,879	789,024	848,829	31.9%
수급자	369,587	399,591	433,779	475,382	520,043	40.7%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	6.2%	6.5%	6.7%	7.1%	7.5%	1.3%p

자료: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17. 7. 18)

1)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17. 7. 18)

■ 장기요양보험 연간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 + 공단부담금)는 5조 52억 원이고, 이중에서 4조 4,177억 원이 공단부담금으로 지급(공단부담률 88.3%)됨

- 2016년 말 요양급여비와 공단부담금은 2012년 대비 각각 60.1%, 62.6% 증가함에 따라 공단부담율은 <표 2>와 같이 1.6%p 증가하는 데 그쳤음
-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67,761원으로 2012년 대비 11.6% 증가하고,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942,415원으로 2012년 대비 13.6% 증가함

<표 2> 장기요양보험 급여지급 추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12 대비 증감률
요양급여비총액(억 원)	31,256	35,234	39,849	45,226	50,052	60.1%
공단부담금(억 원)	27,177	30,830	34,981	39,816	44,177	62.6%
공단부담률(%)	86.9	87.5	87.8	88	88.3	1.6%p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원)	956,986	996,714	1,024,520	1,057,425	1,067,761	11.6%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원)	832,132	872,106	899,361	930,917	942,415	13.6%

자료: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17. 7. 18)

■ 2016년 말 공단부담금 지급금 중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표 3>과 같이 각각 2조 1,795억 원, 2조 2,382억 원으로 각각 49.3%, 50.7% 비중을 차지함

- 재가급여²⁾는 방문요양(73.8%), 주·야간보호(16.6%), 방문목욕(3.5%), 단기보호(0.6%), 방문간호(0.4%)의 순으로 이용도가 높고, 시설급여³⁾는 노인요양시설(88.7%), 노인공동생활(11.3%)의 순으로 높음

<표 3> 장기요양보험 공단부담금 유형별 급여비

(단위: 억 원,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년 대비 증감률
	금액	비중									
재가급여	13,303	48.9	14,864	48.2	16,748	47.9	19,376	48.7	21,795	49.3	15.7
시설급여	13,874	51.1	15,966	51.8	18,234	52.1	20,441	51.3	22,382	50.7	12.1

자료: 2016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2017. 7. 18)

2)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용하는 급여를 의미
 3)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 급여를 의미

- 장기요양기관은 19,398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 중에서 재가기관과 시설기관이 각각 14,211개소(73.3%), 5,187개소(26.7%) 운용 중임
- 2016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16억 원으로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는 각각 2조 5,943억 원(83.9% 비중), 4,973억 원(16.1% 비중)임
-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 기준)는 6,333원, 1인당 월평균보험료는 2,953원을 부과하였음
- 향후 인구 고령화와 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개선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와 보험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본인부담금 한도 초과 재가급여⁴⁾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세법개정안(2017년)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향후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kiri**

4) 현재는 지출한 본인부담금 한도 내(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제공